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5-48
----------	---------

발의년월일 : 2005년 8월 일

발 의 자 : 정종기 의원 외 9인

## 1. 제정이유

거창군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관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매년 자체수입의 일정액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청 공무원 3인,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거창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사업추진단의 교육지원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p>「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 (인)</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